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21. 10



국 토 교 통 부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제 1 장 계획의 내용

1.1 계획의 목적

- 현행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되어,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의 수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천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며, 수계 내 하천간의 기본계획 수립시기, 수립주체 등이 서로 상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문제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 현황과 수리 현황의 보전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대장화하고, 전산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에 있어 이익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1.2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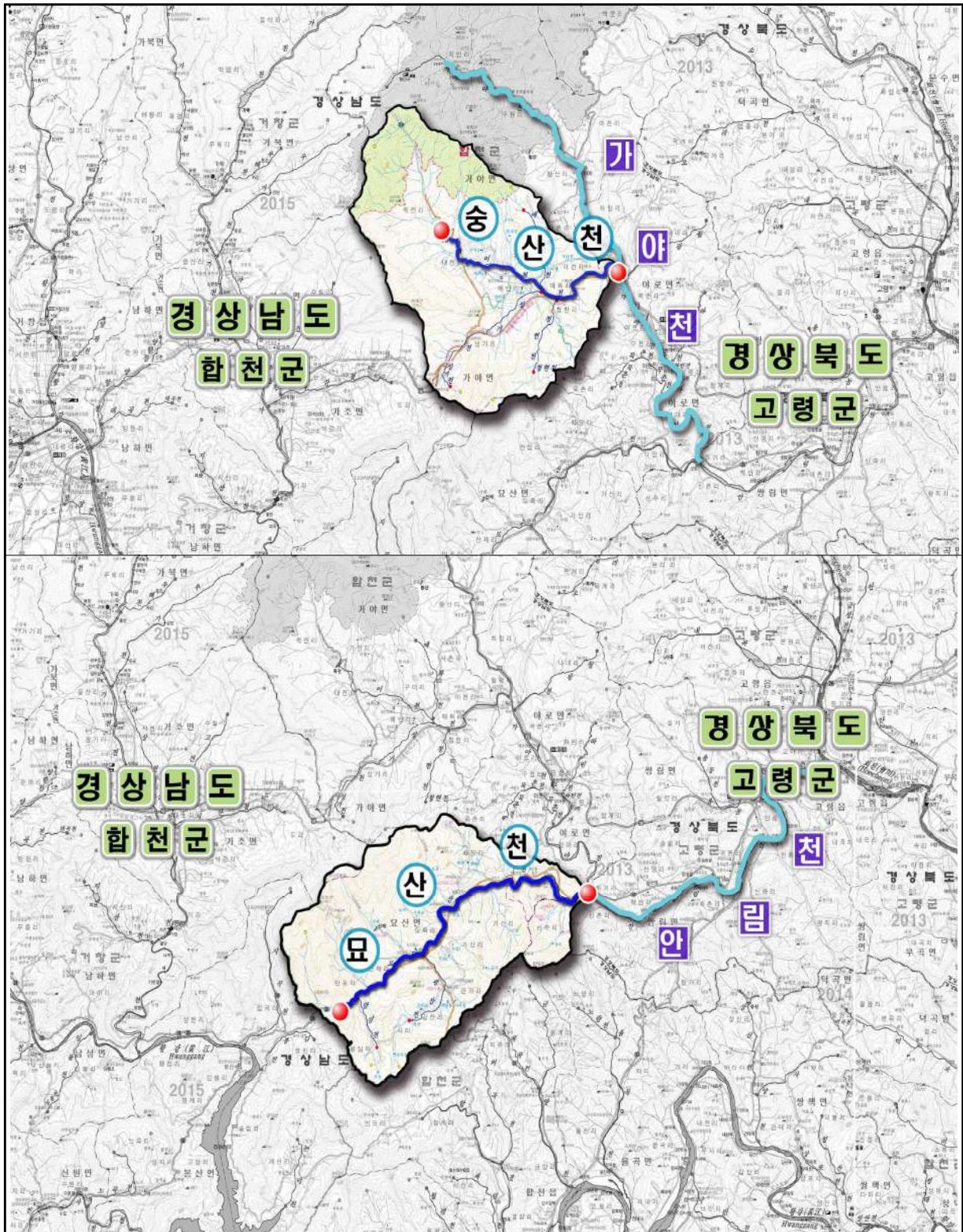
- 2019. 07. 15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1.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21. 06 07 ~ 07. 0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및 심의
- 2022.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예정)
- 2022. 0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 202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요청(예정)

1.3 계획의 내용

- 사 업 명 : 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위치 및 연장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종 점			과업연장 (km)	비고
		시군	읍면	경계	시군	읍면	경계		
합계		2개소						21.78	
송산천	지방	경남합천	가야	대전리	경남합천	야로	가야천(지방) 합류점	9.00	미수립1.5km
묘산천	지방	경남합천	묘산	반포리	경남합천	야로	가야천(지방) 합류점	12.78	

- 계획수립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승 인 기 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협 의 기 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림 1-1>

계획하천 위치도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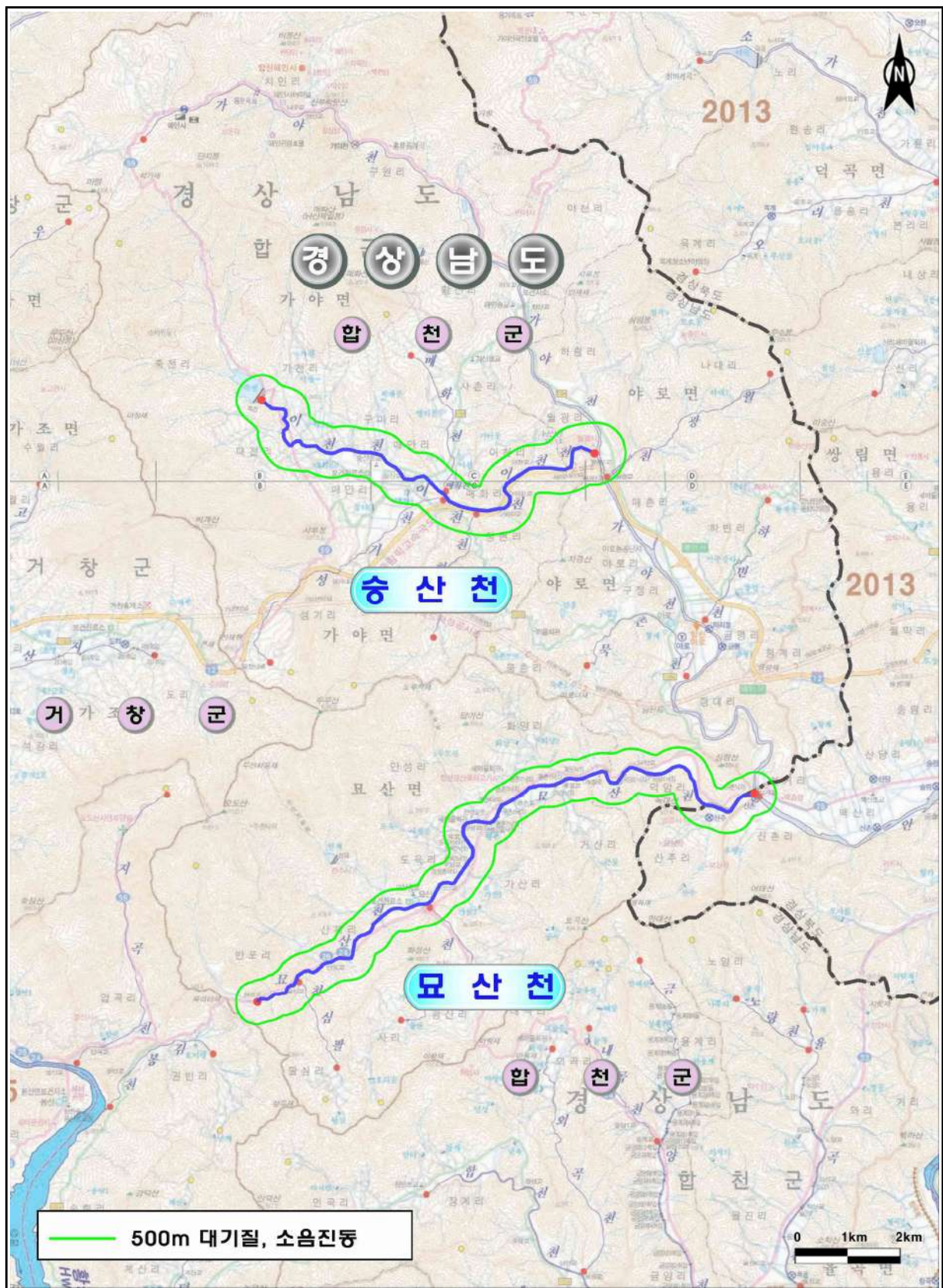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공사시 토지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건설장비 가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 공사시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항목별 계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계획수립에 따른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의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계획수립에 따른 수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하천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건설장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진동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하천경계로부터 500m)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토 양	◦계획하천	◦공사시 폐유 및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공사시 지장물 철거 및 건설장비 운용에 따라 토양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계획하천	◦계획수립으로 인해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그림 2-1>

대상지역 설정도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중점평가항목, 일반항목 및 제외항목 선정

구 분	중점평가항목		일반항목	제외항목
1.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의 개요 대안의 설정	-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위락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기상	악취, 위생공중 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	-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토지이용	-	-	인구·주거, 산업

<표 2-3>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구 분		세부 항목	결정 결과	사 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평가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이 변화
		자연환경자산	평가	◦계획하천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평가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유출, 비탈면 발생 등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 락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경 관	평가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 질	평가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수리·수문	평가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파악
		해양환경	제외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평가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평가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건설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악 취	제외	◦본 계획으로 인한 악취영향 없음
		토 양	평가	◦공사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
		소음·진동	평가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위생공중보전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전파장해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일조장해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제외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미미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제외	◦본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미미
친환경적자원순환		평가	◦공사시 지장물 철거, 수목 훼손,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등 발생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평가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인구·주거	제외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없음
		산 업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2.3 평가 범위 및 방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여, 예측 결과에 따라 적정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2-4>과 같으며, 항목별 현황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임

<표 2-4> 평가 범위, 방법 및 검토내용

구 분		평가 범위 및 방법		검토내용
		평가 범위	평가 방법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현지 및 문헌조사 (탐문조사 포함) ◦사업계획 분석	◦식물상 및 식생현황, 육상·육수동물상 현황 파악 및 영향 예측 ◦자연환경자사 현황 파악 및 영향 예측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하천	◦현지 및 문헌조사 ◦사업계획 분석	◦지형·지질 현황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사면 안정성 등 예측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현지 및 문헌조사 ◦경관변화 예측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수환경의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현지 및 문헌조사 ◦수질영향 예측 ◦수리·수문 해석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 파악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 예측 ◦계획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 예측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하천경계로부터 500m)	◦주변 기상대 기상 자료 분석 ◦현지 및 문헌조사	◦기초자료 활용(대기질 항목) ◦대기질 현황 파악(측정망 활용) ◦공사시 건설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 예측
	대기질			
	토 양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문헌조사 ◦토양오염시 처리검토	◦토양현황 파악, 토양오염시 처리방법 검토
	소음·진동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하천경계로부터 500m)	◦소음·진동 예측식 -거리감쇠 공식	◦소음·진동 현황 파악(측정망 활용) ◦발생원 및 공사시 정온시설 영향 범위 예측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문헌조사 ◦원단위 사용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현지 및 문헌조사 ◦사업계획 분석	◦토지이용 현황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파악

제 3 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대안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함
- 본 계획은 회천권역 지방하천(송산천, 묘산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으로 연장 21.78km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비교, 수단·방법 및 수요·공급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검토함

<표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계획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표 3-2> 대안의 미선정(제외사유)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비고
입 지	◦본 계획은 별도의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대안선정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음	
시기·순서	◦본 계획은 계획홍수위와 기존 제방고를 비교·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과 홍수시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가능한 빠른 시기가 최적의 대안임	
기 타	◦본 계획시행에 따른 [기타] 대안은 없으나 향후 하천정비사업시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제시시 적극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3.2 대안별 비교·검토

3.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비교·검토

- 계획하천과 관련하여 계획수립(Action)과 미수립(No Action)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적절한 개수계획으로 재해 예방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이 기대되는 대안 1(계획수립시: Action)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3-3>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비교·검토

구 분	대 안	
	대안1: 계획 수립시 (Action)	대안2: 계획 미수립시 (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계획시행 후 하천점용허가 재검토 등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 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 저하(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수자원 이용측면	◦수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계획되지 않는 하천계획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이용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주변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습지 등이 위치하나,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소규모의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됨	◦생태계변화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의 훼손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계획의 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 지역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이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현 상태가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경관 영향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공사시에 국한된 일시적 영향으로 판단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향후 계획시행에 따라 공사시 일시적으로 환경기준을 상회할 수도 있으나, 공사 완료 후 다시 원래의 환경질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검토결과	◦하천은 홍수피해와 하천환경오염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하천정비 및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재해방지, 하천의 다목적 관리이용, 환경개선 및 보존 등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재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을 수립(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됨	

3.2.2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 비교·검토

가. 홍수방어대책

구 분	대안 1 (하천개수계획 수립)	대안 2 (홍수관리구역 지정)	대안 3 (천변저류지 개발)
장 점	◦제방축조에 의한 치수안정성 확보 ◦통수능 확대는 주민들의 홍수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 삶의 질 향상 ◦하천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 개선	◦홍수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홍수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부여, 홍수발생 예상 구역 설정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가능	◦홍수조절 효과 확실 ◦비홍수기 시 주차장, 체육시설 등 시민시설 활용가능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 조절과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는 수질 정화 기능
단 점	◦개수계획 수립으로 인한 기득 사유권 침해에 따라 민원 발생	◦치수적으로 불안전 ◦구역 결정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행위제한 및 사유권 침해 발생	◦대규모 유지 취득 어려움 ◦치수적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음
선정안	◎	◎	

나. 홍수량 설계빈도

구 분	대안 1(50년 빈도)	대안 2(80년 빈도)	대안 3(100년 빈도)	대안 4(200년 빈도)
장 점	◦치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 ◦편입부지 및 공사비 저렴	◦치수안전 확보 용이 ◦설계빈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에 부합하는 치수계획 수립 가능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음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음
단 점	◦국지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 ◦최근 설계빈도 상향 적용 추세에 미치지 못함	◦상대적으로 공사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공사대상지역 증대 ◦치수사업의 규모 증가	◦치수사업 규모 증가로 공사비 및 하천구역 편입면적 증가(민원 우려)	◦치수사업 규모 증가로 공사비 및 하천구역 편입면적 증가(민원 우려) ◦편익비용 검토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됨
선정안		◎		
선정사유	◦과도한 개수계획 지양을 위해 제내지 현황 및 유역, 강우 특성 등을 평가하여 적정 설계빈도를 결정하였으며, 사유지 편입 최소화 및 치수경제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3.2.3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검토

- 금회 계획하천에 대한 홍수량 산정시 산정 방법은 “Clark 유역추적법”, “NRCS 무차원 단위도법”, “Snyder 합성단위도법” 등 3가지 방법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단위도의 특성에 대한 제어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Clark 유역추적법’으로 금회 홍수량을 산정하였음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산정공식	Clark 유역추적법	NRCS 무차원 단위도법	Snyder 합성단위도법
내 용	◦유역의 도달시간 및 누가 면적을 통해 순간단위유량도를 유도하여 유출량을 산정	◦단위도의 첨두유량과 첨두유량의 발생시간을 결정한 후 무차원단위도를 사용하여 합성단위도 산정	◦유역의 특성에 따른 상수와 조정된 지체시간을 입력인자로 하는 매개변수 합성단위도 방법
장 점	◦유수의 전이효과 뿐만 아니라 유역의 저류효과도 고려할 수 있음	◦지체시간만을 매개변수로 하므로 적용이 단순함	◦합성단위도법으로 산정방법이 다른 단위도방법과 비교치로 사용
단 점	◦일정규모 이하의 유역에 적용할 경우 저류효과를 산정하는 소유역이 크기가 극소하게 되어 이를 기준하여 적정 홍수량을 산정함이 곤란함	◦경사가 매우 완만한 유역에는 적용성이 떨어짐	◦Snyder방법에 의한 홍수량은 다른 단위도 방법에 의한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어 현실적인 적용성이 매우 낮음
선정안	◎		

제 4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4.1 의견수렴 경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4.2 의견수렴 계획

4.2.1 평가서 초안 공고

- 본 과업인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4.2.2 평가서 초안 공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해당권역의 행정구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40일 이내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할 계획임

4.2.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장소는 추후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종 략 ~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4.2.4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도지사(경상남도), 관할 시장·군수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2.5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 공개할 계획임

제 5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개최

- 주관부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
- 심의기간 : 2021년 06월 07일(월) ~ 2021년 07월 02일(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평가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심의위원

<표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위원명	비 고
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과 장	김 ○ ○	계획수립기관
위 원	낙동강유역환경청	과 장	박 ○ ○	협의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계 장	손 ○ ○	계획수립기관
	(주)평화엔지니어링	상 무	신 ○ ○	민간전문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 ○ ○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합천군 안전총괄과	과 장	박 ○ ○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합천군 환경위생과	과 장	김 ○ ○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합천군	이장협의회장	이 ○ ○	주민대표
	환경교육문화센터	사무총장	김 ○ ○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낙동강유역환경청(1)	□ 낙동강유역환경청(2)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2976('21.6.7) 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교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회신[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2976('21.6.7) 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서민실의 요청한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을 불필요와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심의의견 1부. 끝.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 사 업 개 요 ＞ ○ 계획범위 및 규모 - 송산천(9.0km) : 경남 합천 가야면 대천리 ~ 아로면(가야면 합류점) - 묘산천(12.78km) : 경남 합천 묘산면 반포리 ~ 아로면(가야면 합류점)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자목 하천기본계획 ○ 계획수립기관 /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목표연도 : 계획수립 후 10년 □ 총괄의견 ○ 동 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등 규정에 의거하여 경남 합천군 회천권역에 위치한 지방하천 송산천과 묘산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고려하여 본래의 자연생태계 보존·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사업구역 경제발전 사유 포함)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해당 하천의 현황사진(도문사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포함) 등을 제시 -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분류군에 따른 특성 및 생태계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낙동강유역환경청(3)	□ 낙동강유역환경청(4)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 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함 - 하천생태조사 결과 자연도가 높은 구간은 가능한 한 보전하는 방안 강구 ○ 기존 인공시설물에 대한 치수적·생태적 기능분석을 통한 존치·개설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철거하거나 자연 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소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15.3.,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기술 지침서(2014, 환경부)」 - 유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유로 변경 구간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3. 대안 ○ 대안은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평가준거에 제시된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만이 아닌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이·치수 및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 항목별 저감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저감방안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가. 항목별 심의의견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 하천과의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및 시설물계획 연계성을 검토·제시 ※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동수해종합정비계획 등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각 항목별 조사(문헌, 현지, 탐문 등)시기 및 지점, 항목 및 횡수 등은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조사결과를 지형도에 표기 - 하천 구간별로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 지역의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제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기존 지점·통계·조사자료 등 문헌조사 시 5년 내 가장 최근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조사지점(도면)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거울습지 등시선서조사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 자연경관 심의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지구에 의한 경관 변화가 현저한 곳을 고려한 예비조망점(현황사진 위치를 포함)을 선정하고, 수치 지형자료를 활용한 가시권 분석을 실시 -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전·후 경관 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 ○ 수환경의 보전 - 치수의 안정성과 하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하천 제방 및 호안 증축의 경우 매년 높아지는 홍수위를 대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방증축 공사 시 자연생태계 영향도 유발되므로 친환경적 수해 위험 저감방안으로써 하천 주변의 나지 등의 홍수터를 매입하여 저류저지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제시 - 사업시행 시 오·폐수,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 하천의 동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통한 수리 영향을 예측하고, 계획홍수위 및 하상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종단면도 제시 - 계획평면도 상에 하천구역(기존 및 변경 구분), 축조 및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하천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 낙동강유역환경청(5)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책 검토 -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확폭, 제방 및 하도정비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 계획을 지양하고,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방위,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농경지, 가옥 등)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책(홍수관리 구역 지정, 전변지류지 등)을 우선 검토 ○ 환경기준 부합성 - 주거지역 등 인근의 정수시설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 마련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하천 자연도 평가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관리계획 수립 ※ 기 결정된 친수구역 외 확대는 지양하고, 보전, 복원지역 확대 - 지장물 철거과정 또는 공사시 발견될 수 있는 오염 토양의 현황 파악 및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 방송, 유관기관 활용 등)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등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판례>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시 방역 조치 등 다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함 * [참고] 코로나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 및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 - 군집행사 기피로 대면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미진하다고 계획수립기관이나 승인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설명회(영상 설명, SNS, 기타 정보통신망 등)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기관장에게 통보 - 설명회에 따른 지역주민의 군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기간 및 시간을 분산하여 대면 설명회를 실시	□ 낙동강유역환경청(6)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 본신청 기간(날짜 분산) 또는 시간(예, 10시~12시, 13시~15시, 15시~17시)과 충분한 개별 공간(독립공간 또는 충분한 이격된 책상 배치 등에서 사업자 및 전문가 등이 상주하여 방문자에게 설명 - 설명회 개최 기간 또는 시간을 분산하여 시행하는 경우 및 비대면 설명회를 병행 개최하는 경우 개최 방법과 참여방법, 의견 제출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 고지 6. 기 타 ○ 금회 계획에 반영(신설, 제거설 등)된 개수계획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기수립 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증설치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의 반영결과 및 해당 축수를 표로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0-289호, 2020.12.2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021. 6.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주)평화엔지니어링 [별지 제1호 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수립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기본계획 수립시 수문개설 및 상하류 기능 분담으로 검토하여 개수사업물계획의 지장, 권역내의 지형, 선형, 자연상태가 최우선 고려되도록 계획수립.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별도의견 없음. 2. 도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평가준비서상 도지이용계획 구상안이 수렴되어 있지 않지 않은지 여부를 수렴시 검토하여 평상이 최우선 고려되도록 구상 3. 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별도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동·작물상 조성이 각 부처별 관련시기를 고려한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모든 부처와의 통일이 조성을 지양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사업지역 주민들이 공회 및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정까지 가능하도록 의견수렴 계획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6. 기 타 ○ 시설물 계획이 착각의 시공물에 대한 우려 및 시설의 수명 등에 대해 개수계획 대응 조치에 대해 수문계획을 우선 검토. ☐ 최종 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2021. 6. 16. 심의위원 : 	국토교통부 환경정책·평가사업 지원사업(하천·호수·습지·연못 등)에 대한 KRI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하천공사1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검토의견 회신 (회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송산천, 묘산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공사1과-2875(2021.05.07) 호의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송산천, 묘산천)"에 대하여 불응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붙임 : 회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송산천, 묘산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검토의견 1부, 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2021. 6. 16.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총괄 의견 ○ 본 건은 경상남도 합천 거어면, 묘산면, 이포면 일원의 지방자치단체인 송산천과 묘산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거주인원밀도와 함께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계 건전성을 회복 또는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하천연료 대비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평가하고, 구간 별 가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치수계획 시 하천실제인도를 조정하는 경우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 홍수량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간별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규모의 치수계획 수립하여야 함 ○ 불필요한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질개선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거계획을 확대하여 수립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설정 ○ 생태계연도 1등급지와 연결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 구간별도 이수, 치수, 보전, 친수 등의 공간관리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평가에 이용하여야 함 - 대안 ○ 하천구간에 계획하는 세부내용(치수, 이수, 환경, 공간관리 계획)에 따라 각각의 수질여부제 따라 대안을 설정하여 그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세부 계획구상안 혹은 하천별도 개별적인 계획비교와 치수계획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야 함. ○ 수요공급(상·하·중·하)의 수준, 규모, 효과를 비교 검토하고,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분석을 통해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환경시설물 및 호안시설 등 수단·방법에 관한 대안평가의 경우에도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별 혹은 구간별 평가를 시행하고, 모순·반감이 높은 구간에 대해 명확한 장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3)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보전: 다양한 하천생태계 환경(동식물상·보전지역, 주요생물종·서식지, 습지 및 합류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치수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절한 저감 및 보전대책(출연종 보호, 여도설치, 식물상변화에 대한 대책, 노거수 및 보호수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야 함 ○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측세, 보, 교량, 토안 등의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적용(측리, 콘크리트 제갈설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하천 생태계의 황적 연결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 ○ 수질: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사업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수리수문: 측제 등 가수계획과 호안정비에 대해서는 홍수이력 등 계획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홍수유역이 포도한 구조물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수립 전 지구설정 현황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간관리계획 변경 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주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05. 29. 심의위원 (인)
□ 합천군 안전총괄과 [별지 제1호 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대안의 설정,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금회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묘산천의 경우 상류부 1.42km가 기본계획 미수립 구간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토지이용 구상안 ○ 제방 및 호안정비 등 구조물 계획 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공사로 인해 주변 환경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수·치수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임. - 대안 ○ 대안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항목별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주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권의 제한 등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의견 수립 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최대한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 가능하도록 할 것. - 기타 ○ 의견 없음 □ 최종 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결 방법 : 서면심의 2021. 6. . 심의위원 : .	□ 합천군 환경위생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회천권역(송산천,묘산천)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기본계획의 평가준비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함께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토지이용 구상안 ○ 해당없음 - 대안 ○ '계획비교' 대안으로 자연재해 대비, 생활환경 증진, 수질개선 개선 등을 위해 계획 수립이 타당하며, '수단·방법' 대안으로 치수시설을 보완한 위해 측제,보 축,보축+하도정비계획 수립등이 적절하며, '수요·공급'대안으로 홍수피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해 치수계획 빈도 설정이 타당함.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생물다양성,지형,자연경관,수질,소음·진동 등 평가항목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 주인 등에 대한 의견수립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의견 수렴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이수,치수 목적과 함께 수질개선, 생태적 기능도 검토하여 정비·보전되어야 함. 2021. 6. 30. 심의위원 : .

□ 합천군 이장협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라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기본계획의 평가준거서는 어수저수 특성과 함께 수질개선, 생태적 기능도 적절하게 검토되어 평가 요건되어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2. 도지이용 구상안

○ 해당없음

3. 대안

○ '계획하천' 대안으로 자연하천 대안, 생활환경, 증진, 수변정관 개선 등을 위해 계획 수립에 반영함, '수단-방안' 대안으로 저수시설을 보호를 위해 축제보, 축제보+하도정비계획 수립등이 포함되어, '수요-공급'대안으로 홍수조기 경감 및 방지를 위해 저수계획 반드시 반영이 타당함

4. 평가 항목별파생영향 등

○ 생물다양성, 경관, 자연경관, 수질, 소음 진동 등 평가항목 선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의견 수렴계획은 적절함 것으로 판단 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제작성에 요구사항이 하도정비가 함께 추진될 경우 갈수기 수질부족에 따른 일시적 구간 수질악화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대안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2021. 6. .

심의위원 : [인]

□ 환경교육문화센터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라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회천권역(송산천, 묘산천)의 대상지역 및 백인의 설정,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 타당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에 미치는 것(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되었음.

2. 도지이용 구상안

○ 자연재해가 예방 및 호안정비 계획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과도한 공사를 억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3. 대안

○ 비교적 무난한 안을 선정하는 것.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문제(오염 등)가 대두되지 않도록 계획상 있는 공사 시기, 적당 방안을 강구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연2회 정도 개최하고 많은 참여를 유도.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기관과의 타협을 최소화

2021. . 7. .

결의위원 [인]